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가합738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김용정

변론 종결 2024. 3. 8.

판결 선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53,349,512원 및 그 중 650,320,013원에 대하여 2023. 6. 9.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4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 또는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나. 인용하는 청구: 채권자취소청구

다.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은 2024. 3. 8.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권가희

판사오하나

별지

1)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구상금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피고들 사이의 2022. 2. 25. 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통정한 허위표시를 이유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